

의안번호	제 342 호
의결년월일	1996. 5. 28. (제 44 회)

의결
사항

의안
가결



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6. 4. 9.

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341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6. 4. 9.

제 출 자 : 고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민원편의 확대를 주민등록 업무개선 지침에 의하여 읍면에 권한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·초본 열람·교부를 군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·보완 하고자 함.

(관련근거 행정 13210~262, '96. 2. 26)

2. 주요골자

-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사항 신설

3. 본 문

- 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권한의위임)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. 단,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(민원실)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(생략) 3. 삭제 4. 삭제</p>	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(단,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(민원실) 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</p>